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325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0
1. 전부개정 필요성의 검토	10
2. 전부개정법률안의 구성체계	12
3.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별 검토	19
가. 총칙(제1편)	19
나. 가사소송(제2편)	42
다. 가사비송(제3편)	58
라. 가사조정(제4편)	90
마. 이행의 확보(제5편)	95
바. 벌칙(제6편)	100
IV . 관계기관 의견	10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7.
3. 회 부 일 : 2025.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시행(1991. 1. 1.)된 지 3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

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기존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외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2)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5)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학·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

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6)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

록 함.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 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 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나)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 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 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2)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가) 가사비송사건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정지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3)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중국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상급

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국재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4)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법률에 규정함.

5)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사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6)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84조)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7)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안 제115조)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8)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7조)

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친권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가사비송사건은 제외함.

나) 가정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안 제127조)

종전에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7조)

가)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에 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나)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

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안 제139조)

가정법원은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련 사건으로 이송된 민사사건의 경우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1조)

가)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현상 변경 행위나 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함.

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46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함.

바. 제6편 벌칙

1)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2조)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 부양

료·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2) 형벌 규정의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

가)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나)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보도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각각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조회 결과 등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임.

Ⅲ. 검토의견

1. 전부개정 필요성의 검토

1990. 1. 13. 「민법」 친족·상속편의 대폭적인 개정에 맞추어 종전의 인사소송법(법률 제803호, 1961. 12. 6. 제정)과 가사심판법(법률 제1375호, 1963. 7. 31. 제정)을 통폐합하여 1990. 12. 31. 단일한 절차법으로 「가사소송법」(법률 제4300호)이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타법개정을 포함하여 20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진 바 없음.

현행법의 전부개정 필요성은 법제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뉘어 검토될 수 있음.

먼저, 법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제12조),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제34조).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민사비송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개입하는 등 개별적 상황에 따른 특성이 있어, 단순히 입법경제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준용

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법률의 적용과 해석의 명확성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다른 절차규정의 적용이나 준용을 최소화하고, 현행법에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단일한 절차법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에 법률사항으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한 사항이 대법원 규칙인 「가사소송규칙」에 대폭 위임되어 있어 개별 조문은 제73조까지 있는 데 반하여 「가사소송규칙」은 제138조까지 있는 등 법률과 하위법령 간의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봄.

이와 같은 현행법의 법제는 국민이 현행법만으로 가사소송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가사소송절차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실체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1990년 제정 이래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지금의 가족문화와 사회현실에 조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하려는 조문의 수가 기존 조문의 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거

나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¹⁾ 현행법의 전부개정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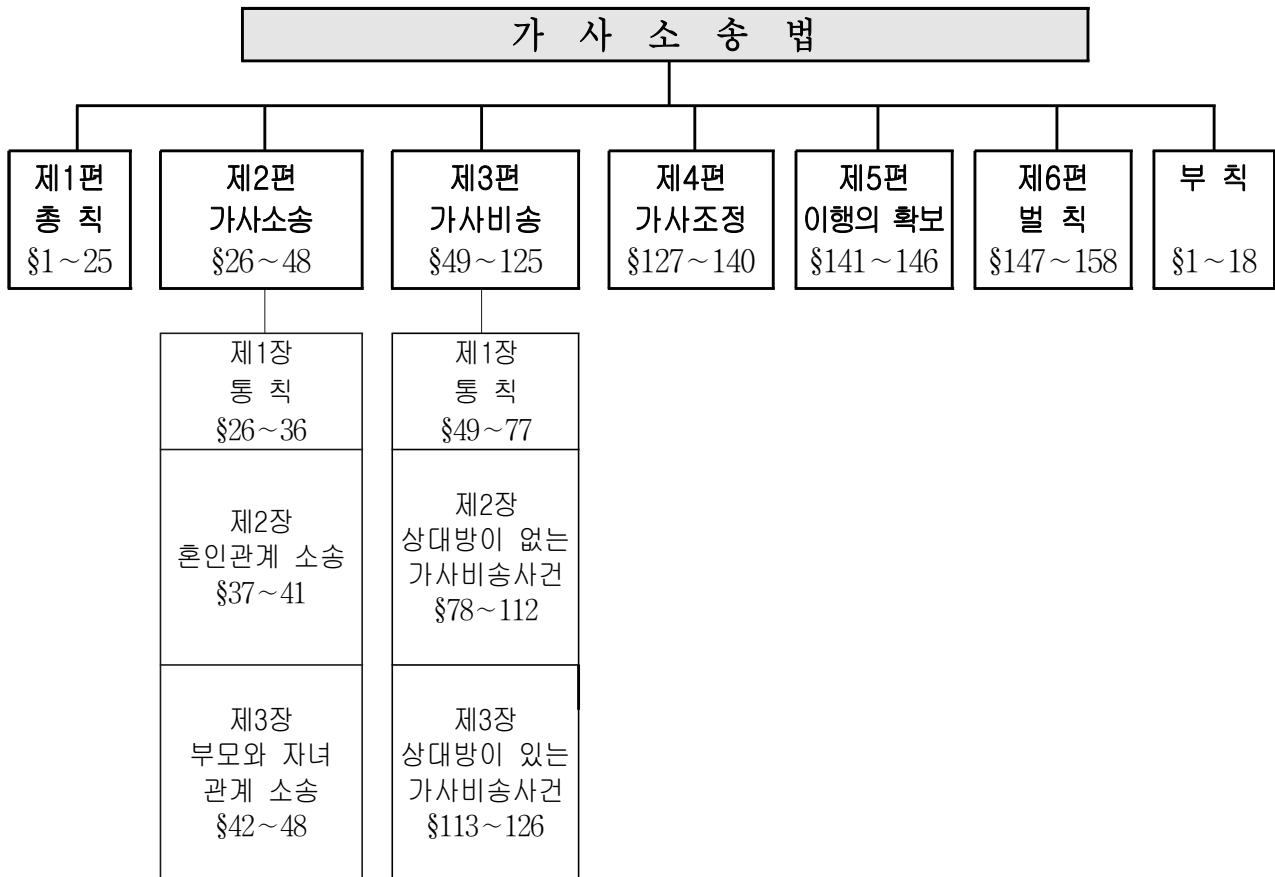
다만, 전부개정법률은 그 실질이 법률의 ‘제정’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실무상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21대 국회 때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198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시행 첫해에는 62억 2,400만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다음 해부터는 단년도 계속사업비용이 발생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2. 전부개정법률안의 구성체계

구성체계 측면에서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보면, 현행은 본칙 기준 6편 6장 2절 약 73개 조문이나, 개정안은 6편 6장 16절 158개 조문 및 4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어 편과 장의 구성에서는 큰 변함이 없는 데, 절 구성의 경우 종전의 2개 절에서 16개 절로 증가하였고 개별 조문의 수도 대폭 증가하였음.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100.

【전부개정안의 체계】



위와 같이 절이 현행 2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것은 현행 「가사소송규칙」 중 법률사항으로 판단되는 상당수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면서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 사건 유형별로 절을 나누어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유형별로 절을 나눈 결과 관할, 즉시항고와 같은 불복 규정, 고지 규정 등이 각각 사건별로 규정되어 사건 유형별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봄.

특히, 제3편 가사비송에서는 각 사건의 유형에 따른 절차규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2장과 제3장에서 종전에 없던 절(0개→15개)을 대폭 신설하였음.

【전부개정안의 구성 체계】

편	장	절	조문
총 칙			제1조 ~ 제25조
가사소송	통 칙		제26조 ~ 제36조
	혼인관계 소송		제37조 ~ 제41조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	친생자관계 소송 입양·친양자입양 관계 소송	제42조 ~ 제45조 제46조 ~ 제48조
가사비송	통 칙		제49조 ~ 제77조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 칙	제78조 ~ 제79조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	제80조 ~ 제89조
		제3절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	제90조 ~ 제92조
		제4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	제93조 ~ 제94조
		제5절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	제95조 ~ 제96조
		제6절 친생자에 관한 사건	제97조 ~ 제99조
		제7절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	제100조 ~ 제104조
		제8절 친권에 관한 사건	제105조 ~ 제106조
		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07조 ~ 제109조
		제10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110조 ~ 제112조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제1절 통 칙	제113조 ~ 제119조
		제2절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제120조
		제3절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제121조 ~ 제123조
		제4절 부양에 관한 사건	제124조
		제5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25조 ~ 제126조
가사조정			제127조 ~ 제140조
이행의 확보			제141조 ~ 제146조
벌 칙			제147조 ~ 제158조

또한, 개별 규정이 현행 약 73개에서 157개로 늘어난 것은 개정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흠결이 있었던 부분을 대폭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다수 신설하며, 현행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소송절차의 기본사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상당수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한 것에 기인함.

【주요 신설 및 정비 규정】

편	조문 및 내용	구 분	
		신설	정비
총 칙	제2조(법원 및 당사자 등의 책무)	○	
	제3조(사생활 보호의 원칙)	○	
	제4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	
	제8조(법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제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제10조(수수료)		○
	제16조(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	
	제17조(절차구조)		○
	제20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	
	제21조(다른 제소권자나 청구권자가 있는 사건의 수계에 관한 특칙)		○
	제23조(보도 금지)		○
	제24조(기록의 열람 등)		○
가사소송	제28조(소송능력)	○	
	제29조(당사자의 추가·경정)		○
	제30조(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	
	제3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	
	제32조(직권조사와 이에 따른 협력의무)		○
	제37조(혼인관계소송의 관할)		○
	제40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
	제41조(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	
가사비송	제48조(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	

제50조(비송능력)	○	
제51조(선정당사자)	○	
제5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53조(가사비송사건의 수계)	○	
제54조(비송대리인)	○	
제55조(비용의 부담)	○	
제56조(준용 규정)	○	
제57조(청구의 방식)		○
제58조(재판장 등의 청구서 심사권)	○	
제59조(청구서 부분의 송달 등)	○	
제60조(청구의 취하)	○	
제61조(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취하)	○	
제62조(청구 취하의 간주)	○	
제63조(사건의 병합)	○	
제64조(심문의 비공개)	○	
제65조(진술 청취의 방법)	○	
제66조(증거조사 등)		○
제67조(재판의 방식)		○
제68조(결정의 고지 및 효력발생시기)	○	
제69조(결정의 집행력)	○	
제70조(가집행)		
제71조(재판의 취소·변경)	○	
제72조(항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3조(즉시항고)		○
제74조(항고법원의 재판)	○	
제75조(재항고)		○
제76조(검사에 대한 통지)	○	
제77조(준용 규정)		○
제85조(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	○	
제94조(진술 청취)		○
제98조(진술 청취)		○
제101조(진술 청취)	○	
제108조(결정의 고지)	○	
제127조(준용 법률)		○
제128조(조정 전치주의)		○
제131조(조정위원)		○
제132조(조정담당판사의 지정)		○

	제133조(조정장)	○	
	제136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
	제137조(조정의 원칙)		○
	제138조(조정의 성립 및 효력)		○
	제139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140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
이행의 확보	제141조(사전처분)		○
	제142조(가압류 · 가처분)		○
	제143조(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제144조(담보제공명령 등)		○
	제145조(이행명령)		○
	제146조(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	
벌칙	제152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153조(즉시항고)	○	
	제154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
	제156조(비밀누설죄)		○
	제157조(보도 금지 위반죄)		○
	제158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

【규칙에서 법률로 전환 주요 조문】

내 용	가사소송규칙		개정안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	⇒	제4조
가사조사관의 업무	제12조	⇒	제12조
가사조사관의 기일출석	제13조	⇒	제13조
상담권고	제12조의2	⇒	제14조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제18조의2	⇒	제20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21조 제22조	⇒	제52조
청구의 방식	제20조	⇒	제57조
사건의 병합	제20조의2	⇒	제63조
결정의 고지 및 효력 발생 시기	제25조	⇒	제68조
	제27조 제28조	⇒	제73조
	제36조	⇒	제89조

즉시 항고	제51조	⇒	제92조
	제57조 제61조	⇒	제96조
	제62조의5	⇒	제104조
	제67조	⇒	제106조
	제77조 제83조	⇒	제109조
	제103조	⇒	제123조
	제109조	⇒	제124조
	제116조	⇒	제126조
재 항 고	제30조	⇒	제74조
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2	⇒	제85조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8조의6	⇒	제87조
결정의 고지 등	제35조	⇒	제88조
	제43조	⇒	제91조
	제62조의4	⇒	제103조
	제62조의5	⇒	제104조
진술의 청취	제59조의2	⇒	제94조
	제62조의3	⇒	제101조
반대청구	제92조	⇒	제115조
심리방법 등	제93조	⇒	제116조
당사자	제96조	⇒	제120조
	제99조 제101조	⇒	제122조
	제110조	⇒	제125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20조의3 제120조의5	⇒	제143조
담보제공명령 등	제120조의7	⇒	제144조
이행명령	제121조	⇒	제145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31조	⇒	제148조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95조의8	⇒	제150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31조	⇒	제152조

3.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편)

(1) 제1편의 구성체계

현행 총칙편은 12개 조문이나, 개정안은 25개 조문으로 조문 수의 증가가 있었고, 현행 제2편 가사소송편에 규정된 ‘관련 사건의 병합’(제14조), ‘소송 절차의 승계’(제16조), 가사비송편에 규정된 ‘절차의 구조’(제37조의2)를 총칙에 규정하였음.

【총칙의 구성 체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신설>	제2조(법원 및 당사자 등의 책무)
<신설>	제3조(사생활 보호의 원칙)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4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5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신설>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제7조(관련 사건의 병합 등)
제4조(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법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설>	제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5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6조(가사조사관)	제11조(가사조사관)
<신설>	제12조(가사조사관의 그 밖의 업무)
<신설>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 출석)
<신설>	제14조(상담 권고)
제7조(본인 출석주의)	제15조(본인 출석주의)
<신설>	제16조(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제17조(절차구조)
<신 설>	제18조(준용 규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제19조(사실조사의 촉탁 등)
<신 설>	제20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제21조(다른 제소권자나 청구권자가 있는 사건의 수계에 관한 특칙)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제22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제10조(보도 금지)	제23조(보도 금지)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제24조(기록의 열람 등)
제11조(위임 규정)	제25조(위임 규정)

(2) 목적 규정의 정비(안 제1조)

개정안은 변화된 시대상 반영 및 타당한 목적·이념의 기재를 위하여 현행법의 목적규정 내용 중 ‘가정의 평화 및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삭제하고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규정하였음.

현행법의 목적 규정은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시 구 인사소송법²⁾과 가사심판법의 목적³⁾을 조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회에서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의 중요성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의 권리와 복지가 중요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목적 규정 정비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2) 「인사소송법」(1961. 12. 6. 제정, 1962. 1. 1. 시행) 제1조(목적) 본법은 인간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가사심판법」(1963. 7. 31. 제정, 1963. 10. 1.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의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 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를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정비(안 제4조제1항)

현행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을 ‘가류·나류·다류 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라류·마류사건’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

대개 가류는 확인소송사건, 나류는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사건, 다류는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사건이고, 라류는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비송사건, 마류는 상대방이 있는 대심적 분쟁사건으로 구분됨.⁴⁾

그러나 법률상 구분만으로 사건의 특성을 추론하기 어려워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가사사건의 분류체계를 먼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4)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4, pp.14~15.

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은 ‘가족관계 가사소송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으로, 가사비송은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며, 각 분류를 별표로 정리함으로써 사건의 특징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대법원판결에서 가사사건으로 확인된 혼인 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⁵⁾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가류·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별표 1 제1호)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별표 1 제2호)
라류 가사비송사건	➡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별표 2)
마류 가사비송사건	➡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별표 3)

(4) 가정법원 관장사항의 정비(안 제6조)

현행법은 가사사건의 경우 명확하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인지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사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관련 민사사

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트1584 판결;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건)이 지방법원 제1심에 계속된 경우 해당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에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이송을 요청받은 지방법원은 관련 민사사건 절차의 명백한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가사사건이 계속된 제1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사사건을 해당 가정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① 지방법원은 제1심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민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소송(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호의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일 것 가. 「민법」 제1115조6)에 따른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 나. 「민법」 제839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당사자가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일 것 3. 제2호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 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가사사건 당사자 사이의 사건으로서 가사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건(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등)의 경우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6) 참고로, 2026. 2. 1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제1115조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동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고 상호 모순되는 결과의 판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함께 해결하는 경우 전문적 후견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봄.

또한, 개정안 제6조제1항은 가정법원이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 지방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직권이 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련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가사사건이 제1심 가정법원에 계속된 상태에서 관련 민사사건이 제1심 지방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만 이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법원의 관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임.

(5) 법관의 제척 이유 등 정비(안 제8조·제9조)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정장과 조정위원회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을 가사조사관에 준용하고 있음(제4조).

개정안은 법관의 제척 이유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척의 기준이 되는 사람에 사건의 당사자 외에 사건본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관이 성년후견인 등인 경우를 고려한 제척사유를 신설하였음(안 제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척·기피 및 회피)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	제8조(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 본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 법관이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법관이 당사자등의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경우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경우 5. 법관이 당사자등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6.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審級)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경우.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

	· 회피)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 2. 가사조사관 3. 조정위원
--	--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당사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218조), 가사 사건은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현재 가류 사건과 나류 사건의 청구 인용 확정판결은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므로(현행법 제21조제1항) 법관 제척사유의 기준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본인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까지 사건본인을 기준으로 한 제척 사유를 규정할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 및 확대(안 제11조·제12조·제13조)

개정안은 재판장 등의 지시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업무 등을 가사조사관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신설></u>	제11조(가사조사관)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가사조사관을 둔다. ②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 정원, 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당사자 등을 위한 지원) ①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생활환경이나 관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단체 등과의 연계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3.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 4. 그 밖에 필요한 지원 ② 법원행정처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직을 둔다.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현행 「가사소송규칙」 7)에 근거를 두고, 실무에서 법원의 조정조치 일환으로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가사조사관⁸⁾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사조사관의 조사업무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사보고서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정부가 제출하였던 개정안의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심리검사, 연계업무, 면접교섭 지원 등 업무를 위한 가사조사관 증원 비용은 20억 7,900만원으로 추산되는바 이와 같은 추가재정소요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가사소송규칙」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안 제11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① 심리검사 전문 가사조사관 증원비용	802,900,000원{37,000,000원 × 21.7명(심리검사 전문 가사조사관 수)}
② 사회복지기관 등 연계지원 담당 가사조사관 증원비용	425,500,000원{37,000,000원 × 11.5명(연계 지원 담당 가사조사관 수)}
③ 면접교섭 지원 담당 가사조사관 증원비용	851,000,000원{37,000,000원 × 23명(면접교섭 지원 담당 가사조사관 수)}
합계	2,079,400,000원

* 위 추계는 시행 첫해의 비용 추계임.

자료: 제21대 국회 정부제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일부 내용을 재구성.

(7)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가)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자녀의 진술청취를 의무화하고(안 제20조⁹⁾),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안 제28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을 신설하는 등 미성년자의 절차보장을 도모하였음. 나아가 미성년자의 실질적인 절차보장 수단의 일환으로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였음(안 제16조).

9) **안 제20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6조(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이하 “절차보조인”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해당 절차의 특성, 미성년자의 나이와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도울 수 있다. ⑥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절차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⑦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 절차,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¹⁰⁾, 미성년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유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함.

절차보조인의 기본적 임무는 어떠한 결정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의 경우, 법원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직권탐지 작용의 일환으로 법원의 조사명령에 따라 사실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비해,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선임

10) 미성년자 자녀가 당사자이거나 사건본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당해 절차에서 언제든지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p.191).

되어 조사 및 보고를 수행한다는 점,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자녀가 외부에 표명하는 의사가 항상 자녀의 진정한 내면의 의사 및 그의 복리와 합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개정안의 절차보조인 규정 신설은 절차보조인이 미성년자의 의사를 단순히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 및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자녀가 외부에 표명한 의사와 다른 관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나) 절차보조인 임무와 자격에 관한 검토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연령,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제2항).

개정안의 절차보조인은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사건 절차에 있어 미성년자를 조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사사건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의 경우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해당 전문가는 가사사건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보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다) 미성년자의 절차상 조력 관련 해외 입법례

독일은 1997년 친자관계법 개정 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8년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amFG)’에서 절차보조인의 임무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절차보조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등 해당 제도를 보완하였음.

위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신상에 관한 친자관계 사건에서 자녀 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즉 자녀의 이익이 법정대리인과 상반되는 경우,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 박탈이 고려되는 경우, 자녀를 감독하고 있는 자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자녀의 인도 또는 체재명령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 면접교섭권의 배제 또는 본질적인 제한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절차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함(제158조 제1항).

독일의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며, 관계인의 지위에서 절차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158조제4항). 절차보조인의 주된 임무는 자녀의 이익을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인데 자녀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외부에 표명한 의사와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음.¹¹⁾

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¹²⁾에 ‘미성년자에게 대리인이 없을 경우’ 소송상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Fed. R. Civ. P.17(c)(2)). 또한, 각주의 후견법 규정의 모델이 되는 통일 후견절차법(UGPPA)에 성년후견절차상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적절하게 대변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소송상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UGPPA 제115조). 대리인과 소송상 후견인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대리인은 소송상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

영국은 아동법(Children Act 1989)에 부모 이외의 대리인이 아동을 대리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자녀가 소송상 대리인(litigation friend)을 통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Civil Procedure Rules, 1998 r21.(2)) 가사소송법(Family Procedure Rules 2010)에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소송상 대리인 또는 미성년 후견인(children’s guardian)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FRR 2010, 16.6(10)(b)).

11) 김상용,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제27호, 사법발전재단, 2017, p.82.

12)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Effective September 16, 1938, as amended to December 1, 2018).

(라)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제도에 따른 비용추계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신설에 따른 비용은 15억 2,500만원으로 추산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안 제16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① 절차보조인 수당	21,820건*(21년 미성년자 관련 주요 가사재판 접수건수) ×20%(절차보조인 선임비율)×200,000원
② 지원 담당자 증원	7명(절차보조인 지원담당자수)×52,000,000원
③ 제도 홍보	제도홍보비용(50,000,000원)+워크숍 등 교육비용(132,500,000원)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106,000,000원)
합계	1,525,300,000원

* 위 추계는 시행 첫해의 비용 추계임.

자료: 제21대 국회 정부제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일부 내용을 재구성.

(8) 미성년자 진술청취 의무화(안 제20조)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자녀의 진술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가 진술할 수 없거나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현행 「가사소송규칙」¹³⁾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개정안은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인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하여 자녀의 의사가 재판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9) 기록의 열람·허가 기준 마련 등(안 제24조)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가사사건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되, 가사사건의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 사항임.

13)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24조는 열람·복사 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제3항), 열람·복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도록 하며(제6항),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인의 소송기록 접근 및 확정사건 판결서의 전자적 열람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외의 사람은 가사사건 기록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으로도 열람·복사할 수 없도록 하는(제7항) 등의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1. 조서(調書)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복사	2. 기록의 열람·복사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 수료를 내야 한다.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침해되어 그 사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 등이 있을 때 ④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 및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 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⑦ 가사사건의 기록 열람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위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입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첫째, 안 제24조제3항의 가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의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가사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전적으로 재판장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전국 가정법원에서 열람·복사의 기준이 다른 문제가 있는데, 허가 기준을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허가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둘째, 안 제24조제6항에서 가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은 현행법에서 불복규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가사사건의 경우 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불복을 허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사나 상담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가사사건 특성상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절차의 진행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효과를 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안 제24조제7항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 및 제163조의2제1항¹⁴⁾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인의 가사사건 기록 열람 등을 금지

14)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②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한 것은 가사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민사사건의 경우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미확정 판결도 포함됨)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가사사건에서는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보다 당사자 및 제3자의 사생활 보호가 더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음.

나. 가사소송(제2편)

(1) 제2편의 구성체계

현행법의 가사소송편(제2편)은 3장 2절 12개 조문임에 비해 개정안은 3장 2절 23개 조문으로, 소송능력, 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등 5개의 조문이 신설되었고 장·절의 구분과 구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제목에 미세한 정비가 있었음.

【가사소송의 구성 체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2편 가사소송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칙	제1장 통칙
제12조(적용 법률)	제26조(적용 법률)
제13조(관할)	제27조(관할)
<신 설>	제28조(소송능력)
제15조(당사자의 추가·경정)	제29조(당사자의 추가·경정)
<신 설>	제30조(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신 설>	제3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제17조(직권조사)	제32조(직권조사와 이에 따른 협력의무)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33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9조(항소)	제34조(항소)
제20조(상고)	제35조(상고)
제21조(기관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제36조(기관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제2장 혼인관계소송	제2장 혼인관계소송
제22조(관할)	제37조(관할)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제38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 제기권자)

제24조(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39조(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40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신 설>	제41조(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
제1절 친생자관계	제1절 친생자관계 소송
제26조(관할)	제42조(관할)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제43조(아버지의 결정의 소의 당사자)
제28조(준용규정)	제44조(인지무효의 소 등의 당사자 등)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45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2절 입양·친양자 입양관계	제2절 입양·친양자입양 관계 소송
제30조(관할)	제46조(관할)
제31조(준용규정)	제47조(입양무효의 소 등의 당사자)
<신 설>	제48조(재판상 과양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2) 적용법률의 정비(안 제26조)

현행법 제17조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⁵⁾, 직권탐지주의는 통상의 당사자 주도의 변론주의와 달리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에 지우는 것으로, 법원이 원칙적인 증거조사 책임을 지고 변론주의로부터 파생된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

개정안은 현행법과 같이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직권

15)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탐지주의와 부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 배제 조문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항).

한편, 현행법은 청구의 인낙을 불허하면서 청구의 포기·화해에 관해서는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임의처분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¹⁶⁾가 가족관계사건(현행 가류·나류 소송 사건)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의 임의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실무상 재판상 이혼·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와 재판상 화해가 다수 이루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¹⁷⁾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 가사소송의 청구에는 청구의 인낙·포기·재판상 화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안 제26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	제26조(적용 법률) ① 가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에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

1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17)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pp.213~215.

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288조(자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49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0조(같은 법 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1조제2항, 제369조 및 제4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항·제3항 및 제2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은 다른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는 경우에도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다.
---	--

【현행법과 개정안의 「민사소송법」 적용 배제 규정 비교】

구 분	현행법(제12조)	개정안(제26조)
가족관계 가사소송사 건의 심리	제147조제2항(제출기간의 제한)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제1항(자백간주) 제284조제1항(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8조(불요증사실) 중 자백에 관한 규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49조(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제350조(제360조제1항, 제36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제361조제2항(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 절차의 효력)	
가족관계 가사소송사 건의 청구		제148조제2항(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효력)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의 효력)

(3) 소송능력 규정 신설(안 제28조)

현행법은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 준용규정(제12조)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5조18)).

개정안은 가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의 소송능력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사능력만 있으면 소 제기, 상소 제기와 같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칙에 규율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였음.

18)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8조(소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소에 대한 응소(應訴)를 포함한다] 및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

	요한 권한의 수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특히 중요하고 가사소송에서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에게 가사소송에서의 적극적인 절차주도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¹⁹⁾

안 제28조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능력을 인정하되(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하 “미성년자등”이라 함)의 소송능력은 제1심 소송행위 및 항소·항고에 한하여 인정하고, 미성년자등이 소송능력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병합 시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제3항), 미성년자등이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4항 전단).

이러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령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직접 법원에 친

19)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장치로써 법적인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 이러한 법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 및 선호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13.5.16.).

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미성년자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비공개심리의 사유와 절차 명시(안 제30조)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의 공개·비공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제109조)²⁰⁾ 및 법원조직법(제57조)²¹⁾에 따라 가사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였음.

안 제30조는 사생활의 비밀 및 당사자의 행복추구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가사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소송에 특유한 비공개심리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① 재판장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사건 본인, 증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법정대

20)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리인, 사건 본인, 증인, 절차보조인 또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소송절차의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헌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심리·판결에 관한 공개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로 ‘소송절차의 심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재판의 판결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안 제31조)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현행 가류·나류사건)의 청구인용 판결에서는 기판력의 확장이 인정²²⁾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송고지 및 소

22)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송참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자들에게 소송절차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 법원이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상속 순위나 상속분에 영향을 받거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연금수급권자와 같이 재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소송계속 통지를 하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통지)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속의 순위 또는 상속분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명,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1 제1호가목3)의 이혼의 무효 사건 2. 별표 1 제1호가목4)의 이혼의 취소 사건 3. 별표 1 제1호나목2)의 친생부인 사건 4. 별표 1 제1호나목6)의 인지청구 사건

	5. 별표 1 제1호나목7)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6. 별표 1 제1호나목10)의 파양의 무효 사건 7. 별표 1 제1호나목11)의 파양의 취소 사건 8. 별표 1 제1호나목15)의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사건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명단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개정안은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이혼의 무효·취소, 친생부인, 인지청구,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파양의 무효·취소, 양친자관계존부 확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사건에서 해당 소송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31조제1항).

개정안은 계속 중인 소송에 고유한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송참가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고, 실무상 직권조사 한계를 보완하여 폭넓은 소송참가인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조속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피고가 충분히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크게 요청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제한 없이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일본은 인사(人事)소송에서 일반사건 모두를 이해관계인의 통지가 필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일본 인사소송법 제28조, 인사소송규칙 제16조).

(6) 혼인관계소송의 관할(안 제37조)

현행법은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2조).

개정안은 1순위 관할법원을 현행법과 같이 유지하면서, 2순위 관할법원으로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규정하고, 3순위 관할법원을 현행 제22조제2호와 같이 규정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7조(관할)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혼인관계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 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 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정법원
	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나.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

	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6.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개정안에서 부부 중 한쪽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추가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양육 공백을 방지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22조제2호의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는 단순히 같은 주소지만으로 충분한지 실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던 곳이어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공동생활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관할위반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7) 재판상 이혼·과양 사건의 청구의 포기·재판상 화해 허용 (안 제41조 및 제48조)

가사소송은 신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분권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현행법 제12조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피고 스스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송물의 임의처분성을 제한하고 있음.

다만, 재판상 이혼·과양 사건의 경우 실체법인 「민법」에서 협의이혼·협의과양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임의처분성은 인정되고, 가사소송 실무에서도 재판상 이혼 사건 재판 도중에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화해하면 즉석에서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조정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있으며²³⁾, 가사조정절차에서 사실상 청구 포기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상 과양사건의 하급심 실무에서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 및 재판상 화해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에 재판상 이혼사건과 과양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별표 1 제1호가목5)의 재판상 이혼 사건

23) 박동섭, 가사소송실무(상), 법률문화원, 2009, p.267.

<신 설>

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중 재판상 화해 및 청구의 포기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 피성
년후견인이 아닌 성년자 사이의 별
표 1 제1호나목12)의 재판상 파양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220조 중 재판상 화해 및 청구의 포
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가사비송(제3편)

(1) 제3편의 구성체계

현행법의 가사비송(제3편)은 3장 2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정안은 3장 15절 78개 조문으로 대폭 변화하였음.

개정안 제3편은 ㉠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 「비송사건절차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가사비송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 통칙을 마련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유형을 크게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면서 세부 사건 유형별로 13개로 나누어 구성하는 등 체계 정비를 하였음.

【가사비송의 구성 체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3편 가사비송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통칙	제1장 통칙
제35조(관할)	제49조(관할)
<신 설>	제50조(비송능력)
<신 설>	제51조(선정당사자)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5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신 설>	제53조(가사비송사건의 수계)
<신 설>	제54조(비송대리인)
<신 설>	제55조(비용의 부담)
<신 설>	제56조(준용 규정)

제36조(청구의 방식)	제57조(청구의 방식)
<신 설>	제58조(재판장 등의 청구서 심사권)
<신 설>	제59조(청구서 부분의 송달 등)
<신 설>	제60조(청구의 취하)
<신 설>	제61조(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취하)
<신 설>	제62조(청구 취하의 간주)
<신 설>	제63조(사건의 병합)
<신 설>	제64조(심문의 비공개)
<신 설>	제65조(진술 청취의 방법)
제38조(증거 조사)	제66조(증거조사 등)
제39조(재판의 방식)	제67조(재판의 방식)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제68조(결정의 고지 및 효력발생시기)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69조(결정의 집행력)
제42조(가집행)	제70조(가집행)
<신 설>	제71조(재판의 취소·변경)
제43조(불복)	제72조(항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3조(불복)	제73조(즉시항고)
제43조(불복)	제74조(항고법원의 재판)
제43조(불복)	제75조(재항고)
<신 설>	제76조(검사에 대한 통지)
제34조(준용 법률)	제77조(준용 규정)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2장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신 설>	제1절 통칙
제44조(관할 등)	제78조(관할)
제45조(심리 방법)	제79조(심리 방법 등)
<신 설>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80조(관할 등)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제81조(정신상태의 감정)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제82조(진단결과 등의 청취)
제45조의3(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83조(진술 청취)
<신 설>	제84조(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신 설>	제85조(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제86조(후견사무에 대한 감독 등)
<신 설>	제87조(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신 설>	제88조(결정의 고지 등)
<신 설>	제89조(즉시 항고)
<신 설>	제3절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90조(관할)
<신 설>	제91조(결정의 고지)
<신 설>	제92조(즉시 항고)
<신 설>	제4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93조(관할)
<신 설>	제94조(진술 청취)
<신 설>	제5절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95조(관할)
<신 설>	제96조(즉시 항고)
<신 설>	제6절 친생자에 관한 사건
<신 설>	제97조(관할)
<신 설>	제98조(진술 청취)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삭 제>
제45조의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삭 제>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삭 제>
<신 설>	제99조(즉시 항고)
<신 설>	제7절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100조(관할)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제101조(진술 청취)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제102조(양육능력 등에 대한 조사)
<신 설>	제103조(결정의 고지)
<신 설>	제104조(즉시 항고)
<신 설>	제8절 친권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105조(관할)
<신 설>	제106조(즉시 항고)
<신 설>	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107조(관할)
<신 설>	제108조(결정의 고지)
<신 설>	제109조(즉시 항고)
<신 설>	제10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44조(관할 등)	제110조(관할)
<신 설>	제111조(결정의 고지)
<신 설>	제112조(즉시 항고)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3장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신 설>	제1절 통칙
제46조(관할)	제113조(관할)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4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신 설>	제115조(반대청구)
제48조(심리 방법)	제116조(심리 방법 등)
<신 설>	제117조(화해 등)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118조(재산명시)
제48조의3(재산조회)	제119조(재산조회)
<신 설>	제2절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신 설>	제120조(당사자)
<신 설>	제3절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신 설>	제121조(관할)
<신 설>	제122조(당사자)
<신 설>	제123조(즉시 항고)
<신 설>	제4절 부양에 관한 사건
<신 설>	제124조(즉시 항고)
<신 설>	제5절 상속에 관한 사건
<신 설>	제125조(당사자)
<신 설>	제126조(즉시 항고)

【제3편 중 규칙에서 법률로 전환 주요 조문】

내 용	가사사송규칙		개정안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21조 제22조	⇒	제52조
청구의 방식	제20조	⇒	제57조
사건의 병합	제20조의2	⇒	제63조
결정의 고지 및 효력 발생 시기	제25조	⇒	제68조
즉시 항고	제27조 제28조	⇒	제73조
	제36조	⇒	제89조
	제51조	⇒	제92조
	제57조 제61조	⇒	제96조
	제62조의5	⇒	제104조
	제67조	⇒	제106조
	제77조 제83조	⇒	제109조
	제103조	⇒	제123조
	제109조	⇒	제124조
	제116조	⇒	제126조
재 항 고	제30조	⇒	제74조
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2	⇒	제85조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8조의6	⇒	제87조
결정의 고지 등	제35조	⇒	제88조
	제43조	⇒	제91조
	제62조의4	⇒	제103조
	제62조의5	⇒	제104조
진술의 청취	제59조의2	⇒	제94조
	제62조의3	⇒	제101조
반대청구	제92조	⇒	제115조
심리방법 등	제93조	⇒	제116조
당사자	제96조	⇒	제120조
	제99조 제101조	⇒	제122조
	제110조	⇒	제12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의 판단을 거쳐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소송절차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 대다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임.

입법방식의 하나인 준용은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경제를 촉진할 수 있으나 그 속성상 준용하는 규정만으로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절차법의 경우 수범자의 명확한 이해가 더욱 요청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같이 일괄적인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나 일부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같이 절차의 상대방이 상정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이 있는데, 민사비송사건의 경우 절차의 상대방을 상정하기 어렵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상대방이 상정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과 같은 일괄준용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따라서 「비송사건절차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가사비송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임.

(2) 비송능력(안 제50조)

현행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비송능력에 관한 원칙을 밝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51조의 규정은 절차법을 지배하는 원칙적인 규정으로 비송사건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²⁴⁾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입법불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가사비송에서 비송능력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재산적 관련성이 크거나²⁵⁾ 당사자 대립구조가 현저해 민사소송과 유사한 경우²⁶⁾ 비송능력을 부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비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각 사건

2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2014.7., p.21.

25) 안 제50조제2항제1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허가 청구, 상속·유언·부양에 관한 사건 등.

26) 안 제50조제2항제2호;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 제1호의 각 사건,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의 각 사건.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사건 중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사비송절차의 비송능력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가사비송절차에서도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진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비송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는 등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더라도 비송능력을 인정하여 절차주도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특히,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권과 관계없는 신분적 권리에 대하여 독자적인 비송능력을 부여하여 재판 청구권을 확대하여 보장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소송능력에 관한 개정안(안 제28조)과 달리 심급별로 제한능력자의 비송행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비송사건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주의·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며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제한 없는 비송능력을 규정할 것인지 행위능력의 제한이 있음을 고려하여 가사소송사건과 같이 비송능력을 제1심에 한하여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3) 선정당사자(안 제51조)

현행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은 가사비송사건의 선정당사자²⁷⁾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가사비송사건 선정당사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1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중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절차가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바꿨을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절차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당사자의 소송

27)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능력, 자격 상실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4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237조제2항 및 제238조를 준용한다.
--	--

판례는 비송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규정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있으나²⁸⁾ 선정자가 다수인 경우 선정당사자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각하하면 비송사건의 간이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실무상 상속재산분할 등과 같은 비송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를 허용하는 예가 있을 수 있어, 개정안은 선정당사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4) 이해관계인의 참가(안 제52조)

현행법 제37조²⁹⁾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가사소송규칙」³⁰⁾은 참가신청에 관한 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28) 대법원 1990. 12. 7. 90마674·90마카11 결정.

29) 「가사소송법」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30) 「가사소송규칙」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① 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이해관계인의 절차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참가 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가 변경될 수 있는 자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지위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참가

는 불복하지 못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결정과 제5항에 따른 참가결정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결정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의 참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5항의 참가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차에 참가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개정안은 ‘재판결과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가 변경될 수 있는 자’³¹⁾ 즉, ‘사건본인’의 절차참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안 제52조제1항), ‘법령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검사·지방자치단체장’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지위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절차참가를 허용함(안 제52조제2항).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

31) 가령 성년후견개시 청구에서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부 또는 모가 성·본 변경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민법」 제781조제6항), 친권자 지정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민법」 제909조제4항) 등.

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²⁾ 또한, 참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참여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안 제52조 각 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법률관계가 변경될 수 있는 자는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과 달리 가정법원이 상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은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절차참가, 제2항은 법원의 인정이 필요한 절차참가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응 이해됨.

그런데, 안 제52조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참가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부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52조의 각 항들 사이의 체계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가사비송사건 비용의 부담 등(안 제55조·제56조)

가사비송사건의 비용은 「비송사건절차법」의 비용에 관한 부담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이하)을 준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을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32) 박동섭, 주석가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4, p.47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비용의 부담) ①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한 사건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준용규정)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비용 부담과 담보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실무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봄.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현행법과 개정안에서 검사가 청구한 사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6) 청구의 취하(안 제60조·제61조)

개정안은 가사비송사건의 취하 및 취하간주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0조(청구의 취하)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청구 취하의 효력이 있다. 1. 제67조제1항의 결정이 있은 후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다음 각 목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안(本案)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審問期日)에 진술한 경우 가. 별표 3 제1호다목의 재산분할

에 관한 처분 사건

나. 별표 3 제4호나목의 상속재산
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
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
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

1.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

2. 상대방이 출석한 심문기일에 제3
항 단서에 따라 말로 취하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날

3.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심문
기일에 제3항 단서에 따라 말로
취하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⑦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1조(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취
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청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 취하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가목의 사건 중 「민법」 제9조제1항 및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청구
2. 별표 2 제1호다목의 사건 중 「민법」 제12조제1항 및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개시의 청구
3. 별표 2 제1호마목의 사건 중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특정후견의 청구
4. 별표 2 제1호바목의 사건 중 「민법」 제9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청구
5. 별표 2 제1호서목의 사건 중 「민법」 제959조의15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
6. 별표 2 제7호차목의 사건 중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청구
7. 별표 3 제2호다목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8. 별표 3 제2호라목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청구

가사사건 실무에서 가사비송사건의 취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는 가사비송사건 취하에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가사비송사건의 취하 가능 여부와 그 요건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실무와 법률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가사비송사건 취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상대방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을 구분하여, ㉠ 상대방 없는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제1심 재판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은 대심적 구조로 진행됨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1조).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비록 비송사건이지만 분쟁적 성격이 강하고 소송사건과 병합되는 경우도 있어 개정안과 같이 소송사건에 준하여 취하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가사비송사건 중 성년후견개시의 청구나 한정후견개시의 청구 등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의로

청구를 취하하여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나 미성년 자녀 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성년후견인 등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취하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일본 입법례에서 가사심판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현행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 재산분할사건, 성년후견사건 등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으며, 후견개시의 신청·성년후견인의 선임신청 등의 사건은 심판이 되기 전이어도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때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³³⁾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7)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현행법은 절차상 이유로 중국재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중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제43조제3항·제4항)³⁴⁾.

개정안은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중국재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

33) 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82조(가사심판의 신청의 취하)·제83조(가사심판의 신청의 취하의 의제)

34) 「가사소송법」 제43조(불복)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중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중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중국재판(終局裁判)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한 법관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한 법관이 기명날인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사건 본인
2. 주문(主文)	2. 주문(主文)
3. 이유	3. 이유
4. 법원	4. 법원
③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서에는 제2항제3호의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가사비송사건의 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판이라는 용어는 일본 「가사심판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우리 「가사심판법」 제정 당시 가정 내의 일을 공개된 법정에서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비공개 장소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과학적인 사실조사를 근거로 인의(仁義)에 둔 재판을 함으로써 미풍양속에 이바지하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사심판법」에 따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심판관’으로 정의하고 비송사건에 관한 가정법원 재판 방식을 ‘심판’으로 규정한 바 있음.³⁵⁾

그런데, 현행법에서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제39조제4항) 그 불복방법도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결정과 같은 점, 심판의 효력으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³⁶⁾ 등을 미루어보면 현행법상 심판은 사실상 ‘결정’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 내의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개정에 따른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67조제3항은 현행법과 같이 상대방 없는 비송사건의 결정서에는 이유기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라 하더라도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기각의 이유를 알 수 있게 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35)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pp.277~278.

36) 박동섭, 주식 가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4, p.478.

(8) 가집행(안 제70조)

개정안은 판결 및 결정에서 가집행을 명하는 인도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고, 가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을 가집행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 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제70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 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 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판결로 미성년 자녀의 인도 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법은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집행할 필요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유아’는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제2조제1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제2조제1호), 법률상 유아는 해석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미성년 자녀로 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또한, 현행법 제42조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³⁷⁾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가집행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가사비송사건 중 재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³⁸⁾가 있는 등 규정과 실무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안 제42조제1항 단서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일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9) 국선후견인의 선임 등(안 제84조)

37)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656 판결.

개정안은 사건본인에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려는 내용 등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4조(국선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사건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 본인에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있더라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 본인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되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하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이라 한다)의 보수 및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의 자격, 선임 및 취소, 보수 및 비용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선후견인 제도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명시적 법률 규정을 통해 국선후견인 제도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 및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8억 5,000만원, 2032년 160억 9,0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42억 9,100만원(연평균 88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안 제84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국선후견인 보수	1,610	4,888	8,293	11,830	15,485	42,106	8,421
국선후견감독인 보수	39	117	198	284	373	1,101	202
후견사건 심판절차비용	201	208	217	225	232	1,084	217
합계	1,850	5,213	8,708	12,339	16,090	44,291	8,8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후견사무에 대한 감독 등(안 제86조)

개정안은 미성년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도 전문 조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 조사인에게 보수가 지급되어 미성년자, 피후견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①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년후견사무·한정후견사무·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제86조(후견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후견사무·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 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경우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사무의 실태나 재산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과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2.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② 가정법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에게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하면 피후견인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자의 의무, 책임, 보수 및 비용 청구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	---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의 불법행위, 후견사무의 불이행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람을 통한 후견사무 감독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제45조), 미성년후견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의후견은 현행법 제45조의 7에서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전문 조사인의 활용 규정은 없음.

후견 사건의 감독 시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힌 사건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여 재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성년후견이나 임의후견 사건에서도 회계지식에 대한 전문 조사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전문 조사인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후견사무의 전문 조사인 활용 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가 지급되면 피후견인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국가의 보수 부담 규정은 요보호자의 후견사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제도의 이용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및 전문 조사인 보수의 국가 부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봄.

[안 제86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① 성년후견 등에 대한 전문 조사인 보수	성년후견 등에 대한 전문조사인 보수{성년후견 등에 대한 전문조사인 보수{278.6건(예상 건수) × 1,200,000원(공공후견인 수당 150,000원×8월)}}
② 미성년후견에 대한 전문 조사인 보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전문조사인 보수{246.1건(예상 건수) × 1,200,000원(공공후견인 수당 150,000원×8월)}
합계	629,640,000원

* 위 추계는 시행 첫해의 비용 추계임.

자료: 제21대 국회 정부제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일부 내용을 재구성.

(11) 친권에 관한 사건의 관할(안 제105조)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사건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 ³⁹⁾ 5. 친권에 관한 사건 (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제105조(관할) ① 별표 2 제7호의 친권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 관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7호가목의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사건은 제37조제1호부터 제4호 ⁴⁰⁾ 까지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39)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40) **안 제37조(관할)**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혼인관계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생활하였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현행법상 서울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부부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친권 행사방법 결정 사건의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이 되어 사건의 진행 중에 미성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개정안은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경우에도 안 제3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12)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안 제115조)

개정안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5조(반대청구)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원고 또는 청구인의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정법원

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나.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규칙」 제92조⁴¹⁾에서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송적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민사소송⁴²⁾ 및 가사소송과의 균형상 항고심에서도 반대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 가사비송사건은 재량적 처분인 관계로 항고심에서 반대청구를 허용하더라도 원고나 청구인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동일한 절차 내에서 관련성 있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반대청구 기한을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연장하고, 재산상 의무이행 외의 반대청구(부부의 동거, 친권상실, 자녀의 인도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41) 「가사소송규칙」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건립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42)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규정의 경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반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경우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청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반대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가사조정(제4편)

(1) 제4편의 구성 체계

개정안은 현행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사조정편에 조정장에 관한 규정(안 제133조)를 신설하여 14개 조문으로 구성한 것 외에 체계상의 큰 변화는 없음.

【가사조정의 구성 체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편 가사조정	제4편 가사조정
제49조(준용 법률)	제127조(준용 법률)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128조(조정 전치주의)
제51조(관할)	제129조(관할)
제52조(조정기관)	제130조(조정기관)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54조(조정위원)	제131조(조정위원)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132조(조정담당판사의 지정)
<u><신 설></u>	제133조(조정장)
제55조(조정의 신청)	제134조(조정의 신청 방식)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제135조(사실의 사전 조사)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제136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제58조(조정의 원칙)	제137조(조정의 원칙)
제59조(조정의 성립)	제138조(조정의 성립 및 효력)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139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제140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2) 준용법률(안 제127조)

현행법은 가사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면서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 선임에 관한 규정(제18조)을 준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 규정을 준용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조정절차에 대표당사자 제도를 도입하였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⁴³⁾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준용 법률) 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가사조정에서의 당사자의 추가·경정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민사조정의 대표당사자 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대표당사자 선임을 통하여 나머지 당사자의 소송상 편의를 제고하는 기

43) 「민사조정법」 제18조(대표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多數)의 당사자는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4. 대리인의 선임

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능이 있는데,

가사조정외의 경우 당사자 개개인의 개성과 이해관계가 중시되고, 가사조정절차는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타협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사조정절차에 대표당사자 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조정 전치주의(안 제128조)

개정안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을 세분하고, 조정 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8조(조정 전치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1. 별표 1 제1호가목5)의 재판상 이혼 사건 및 같은 호 나목12)의 재판상 파양 사건(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호 나목16)의 상속권 상실 사건 2. 별표 1 제2호의 재산관계 가사소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사건 3. 별표 3 제1호의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4. 별표 3 제2호가목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5. 별표 3 제2호나목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 6. 별표 3 제3호의 부양에 관한 사건 7. 별표 3 제4호의 상속에 관한 사건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현행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임의처분성을 불문하고 모두 조정 전치주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59조제2항 단서⁴⁴⁾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 간 내용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사항에 관한 조정은 그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현행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사건인 재판상 이혼 사건(별표 1 가목5)), 성년자 간의 재판상 파양 사건(별표 1 가목12))과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현행 다류 가사소송사건) 등을 조정 전치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현행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친권 등의 상실 사건,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사건, 친권의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일부 제한 사건 등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 전치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규정 간 내용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44)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행의 확보(제5편)

(1) 제5편의 구성 체계

개정안 제5편은 현행 제5편 중 사문화된 조항인 제65조를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규정을 신설(안 제146조)함으로써 조문수의 변경은 없었음.

【이행의 확보 조문 체계 비교】

현행	개정안
제5편 이행의 확보	제5편 이행의 확보
제62조(사전처분)	제141조(사전처분)
제63조(가압류, 가처분)	제142조(가압류·가처분)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43조(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144조(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이행 명령)	제145조(이행명령)
제65조(금전의 임치)	<u><삭 제></u>
<u><신 설></u>	제146조(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2) 사전처분(안 제141조)

개정안은 사전처분이 확정되었어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발령법원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하고, 사전처분의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려는 등의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사전처분)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결정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보호, 감독과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②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1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
2.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도록 하는 명령 3.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명령
--	--

현행법 제62조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등), ㉡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전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사전처분 취소·변경 제도는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을 한 이후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실무상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1주일로 매우 단기간이고, 사전처분이 확정된 후 본안소송 진행 중 취소·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가정법원 등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

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현행법 제67조제1항), 사유 발생 후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그리고 개정안에서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사전처분은 일반 민사사건 보전처분에 비하여 더욱 긴요하게 작용하고, 양육권 분쟁 등 일정 유형의 가사사건에서는 심리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심리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바. 벌칙(제6편)

(1) 제6편의 구성 체계

개정안 제6편은 현행 제6편 11개 조문에 즉시항고 조항을 추가하여 (안 제153조) 12개 조문으로 구성됨.

【벌칙의 체계 비교】

현행	개정안
제6편 벌칙	제6편 벌칙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147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48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149조(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150조(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151조(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52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	제153조(즉시항고)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154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155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71조(비밀누설죄)	제156조(비밀누설죄)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157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73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제158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2)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안 제152조)

개정안은 현행법상 감치의 요건 중 하나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감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2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44조제6항45)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5조제1항제1호46)에 따른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5조제1항제2호47)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48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법 제68조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3기 이상의 의무 불이행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해태되고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무상 감치 제재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이행 명령에서의 구체적 사정(가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현재는 소득이 없으나 몇 개월 후 소득이 생기는 경우 수개월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음)에 따라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도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현행법 제68조제1항의 “정기적” 문언을 삭제하였음.

이상의 개정안은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미성년자와 요부양자의 복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45) **안 제144조(담보제공명령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6) **안 제145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결정, 사전처분결정,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 의무

47) **안 제145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결정, 사전처분결정,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 의무

2. 미성년 자녀의 인도 의무

IV.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1991년 제정 후 34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가사소송법 조항들이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바,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국선후견인 제도 도입, 조정 전치주의 적용대상에 상속권 상실 사건 포함 등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198호)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도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령자나 장애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하고, 양육비 지급의 실효적 확보, 양육 공백 방지를 위한 관할법원 정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미성년 자녀 인도 재판 집행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가사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가사재판절차의 필수적인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사사건의 편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국민의 가사재판절차에 대한 이해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